## 2022년도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 공고

우수한 숙련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의 기술 전수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2022년도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 및 교육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 사업 목적

O 오랜 경험과 기술·기능을 보유한 우수 숙련기술인을 활용한 중소기업 및 학교·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숙련기술 전수 및 컨설팅 등**으로 기업경쟁력과 교육 현장성 강화

### 2. 지원대상 및 내용

구분	우선지원대상기업	고등학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원대상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중 지원신청일 현재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으로 - (기술분야) 상시 근로자 2인 이상 사업장 - (인적자원개발분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방법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 - 고객소통 - 민원조회 - 사업장관리번호 찾기(사업장용)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관할지사 선택 - 가입조회하기 - 고용 상시 인원수 확인	<ul> <li>-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li> <li>-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기술고등학교</li> <li>-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고 3학년을 위탁받아 교육하는 학교</li> <li>-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고용노동부 지정)</li> <li>-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li> <li>- 법무부 운영 교정시설의 직업훈련 과정</li> <li>-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운영 장애인 대상 직업훈련기관</li> </ul>
지원내용	- 경영 및 인적자원관리 진단·지도 (인사·조직, 노무, 재무 및 회계, 생산, 유통관리, 수출입 업무, 안전관리 등) - 기업진단 및 HRD 컨설팅 - 근로자 적합 훈련 설계(현장훈련 및 학습조직 등) - 현장 기술 전수(애로기술 해결 등)	- 현장 실습 지도 - 동아리반(기술.기능 실습) 지원 ※ 학교에서 승인한 동아리만 가능하며, 동아리원 전원이 참여하여야 함 ※ 실습 위주 지원 가능

#### 3. 지원 조건

O 지원분야

기술 · 기능 분야	인적자원개발 분야
기계, 재료, 화학, 섬유의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식품가공, 건설,	경영·회계·사무 분야
디자인·문화콘텐츠, 이·미용, 음식서비스, 공예, 산업안전 (13개 분야)	HRD 분야 (2개 분야)

○ 지원시간 : 평일 09:00~21:00, 1일 최대 5시간까지 지원 가능 (1일 1개기관 지원)

※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임시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날 지원 제외, 중식 및 석식 시간 지원 제외)

기술·기능 분야	분야별 최대 100시간
인적자원개발 분야	분야별 최대 30시간

#### O 지원비용 : 무료

※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활용에 따른 수당 및 여비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

#### 4. 지원요건 및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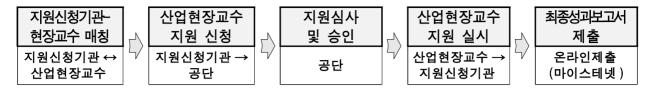
O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근로자 기준

산 업 분 류	상시근로자수	지원여부
1. 제조업(단,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제외)	500명 이하	가능
2. 광업		가능
3. 건설업		가능
4. 운수 및 창고업		가능
5. 정보통신업	300명 이하	가능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단, 부동산 이외 임대업 제외)		불가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가능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가능
9. 도매 및 소매업		가능
10. 숙박 및 음식점업	200명 이하	가능
11. 금융 및 보험업	200명 이야	불가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가능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가능

#### O 지원 제외기관

- 우선지원 대상기업 산업분류 중 지원불가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신청일 현재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기업
- 최근 2년('20~'21년) 연속으로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기술·기능분야 지원을 받은 기업
- 최근 2년('20~'21년) 내 인적자원개발 분야 지원을 받은 기업
- 이외에 사업 지원대상 제외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참고1)

#### 5. 지원 절차



- (지원신청기관-현장교수 매칭) 산업현장교수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지원신청분야에 적합한 산업현장교수를 지정하여 지원 협의(검색방법 참고2)
  - ※ 지원신청기관은 필요 시 소재지(또는 지원장소) 관할 공단 지부·지사로 지원신청분야(내용) 에 적합한 산업현장교수 추천 요청(11. 지원신청 문의처 참조)
- 지정된 산업현장교수는 지원신청기관 사전 진단 후 직무수행계획 수립
- (지원 신청) 지원신청기관은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지원장소 소재지 관할 공단 지부·지사로 제출(온라인 신청)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와 전수 장소가 다를 경우에는 '지원 장소 확인서'를 첨부하여 <u>실제 지원이 이루어지는 지원장소 소재지 관할 지부·지사</u>로 신청 가능 [별지7] 참조
- (지원결정 심사 및 승인) 관할 지부·지사는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심사하여 지원기관을 결정하고, 지원기관별 지원시간 조정 후 최종 승인
  - ※ 지원신청기관이 많아 가용예산을 초과할 경우 신청기관별 지원 시간 조정
  - ※ 산업현장교수 1인당 연간 총 지원 가능 시간 400시간으로 400시간 초과 시 지원시간 조정
- (지원실시) 직무수행계획에 따라 지원활동 실시 ※지원활동 불시 모니터링 실시
- 산업현장교수의 월별 지원실적보고서 확인 후 지원금·여비 지원 (공단 관할 지부·지사→산업현장교수, 지원 마지막 달은 최종성과보고서 확인 후 지원)
  - 수당 : 1시간 기준 100,000원
  - 여비(공단 여비규칙 준용): 교통비: KTX일반

숙박비: 실비 (상한액 : 서울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외 지역 50,000원)

○ (최종성과보고서 제출) 지원이 종료된 후 산업현장교수는 마이스터넷을 통하여 최종성과보고서 제출

#### 6. 지원 신청방법

- (접수기간) '22. 3. 2.(수) 10:00 ~ 3. 14.(월) 18:00
- O (신청방법) 산업현장교수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에서 마이스터넷으로 신청
  - ※ 처음 신청하는 기관은 단체회원 가입 및 공단 승인 후 신청 가능

- ① 마이스터넷 홈페이지(https://meister.hrdkorea.or.kr) 접속
- ② 회원가입 및 로그인
- ③ 상단 '산업현장교수' '산업현장교수 지원 신청하기' 클릭
- ④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후 신청버튼 클릭하여 등록 ※ 신청 버튼 클릭 후 접수 마감일시 이전까지 상시 수정 가능
- (**/ 세출서류**)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아래 표 참조)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는 전산시스템에 직접 입력
- 주의사항 : 첨부서류는 반드시 전산시스템 해당 항목에 맞게 첨부

구 분	제 출 서 류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의 직무수행계획서 [별지4]]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별지8] - 지원 장소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와 전수 장소가 다른 경우만 제출)		
학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등	-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의 직무수행계획서 [별지5] - 고용노동부 인가증(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 한함)		

#### 7. 지원 결정 심사

- O 각 지부·지사별로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 결정
- 아래 적부심사항목에서 한 항목이라도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

적부심사항목	세부내용		
신청서류	- 지원신청기관의 제출 서류 미비 여부 · 제출서류 누락 및 미비 · 제출서류의 직인 등 날인 누략		
지원대상	<ul> <li>지원신청기관의 신청 가능 대상 여부</li> <li>지원대상 제외기관 해당 여부</li> <li>기술·기능 분야의 경우 3년 연속 지원 여부</li> <li>인적자원개발 분야는 최근 3년간의 지원 여부</li> </ul>		
적합성	- 지원신청기관의 지원내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		

8. 선정(승인)결과 확인 : '22.3.28(월) 이후 마이스터넷을 통해 확인 가능 (지부·지사별 상이)

### 9. 선정 후 준수사항

O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는 직무수행계획서에 따라 지원신청기관과 합의한 지원 기간 동안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지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지원 기간 중 불가피하게 <u>지원일정 또는 지원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u>, <u>관할</u> 지부·지사로 변경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변경일이 지원일자 보다 빠를 경우	지원 변경일 3일전까지 변경신청서 제출
변경일이 지원일자 보다 늦을 경우	직무수행계획서의 지원일자 3일전까지 변경신청서 제출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 <u>긴급한 상황 발생 시</u>에는 <u>지원일자 전일까지</u> 변경 사항에 대하여 공단 관할 지부·지사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변경신청 없이 임의로 일자 및 지원장소를 변경하여 지원할 경우 지원금 미지급 및 주의 또는 경고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공단은 지원신청기관과 산업현장교수가 직무수행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고 지원현장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전수자 및 지원신청기관의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신청기관과 산업현장 교수는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 지원신청기관은 산업현장교수 지원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산업현장교수가 요청 하는 제반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지원신청기관은 현장 지원 종료 후 산업현장교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최종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산업현장교수는 공단에 보고회의 일자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 O 지원신청기관과 산업현장교수는 산업현장교수 지원과 관련한 모든 서류를 지원활동 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산업현장교수는 매월별로 월별지원실적보고서를 익월 7일까지 관할 공단 지부·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 종료 후에는 최종성과보고서를 익월 7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인적자원개발 분야는 최종성과보고서만 제출합니다.
- 공단 관할 지부·지사에서 산업현장교수의 최종성과보고서가 충실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보완을 요구할 경우, 산업현장교수는 공단이 지정한 기일까지 보완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업현장교수는 지원사업 이행과정에서 공단과 지원신청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사전 협의 없이 판매, 복사, 발표, 정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산업현장교수에 있 습니다.
- 지원신청기관은 산업현장교수로부터 현장지원 받은 내용을 산업현장교수와 사전 협의 없이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 10.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지원내용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지원신청기관과 산업현장교수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미선정, 지원선정취소 등)는 공단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 공고된 일정은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마이스터넷을 통하여 공고하니, 마이스터넷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결정 후라도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O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본인이 재직 중인 기관에는 산업현장교수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 지원기간 중에라도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운영지침」에 따른 산업현장교 수의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사업을 즉시 중단하여야 합니다.
- 지원신청기관이나 산업현장교수가 '9. 선정 후 준수사항'을 임의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해당 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O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운영지침 및 공단의 결정 에 따라야 합니다.
-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으로 인한 **예산절감 조치가 시행될 경우** 직무 수행계획서 상의 **지원 시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11. 지원신청 문의처

지관명	71.71.09	담당자 연락처	소재지		
서울지역본부	기판당		관할 구역		
서울특별시의 동대문구ㆍ성동구ㆍ황진구ㆍ송파구ㆍ강동구ㆍ중당구ㆍ강남구ㆍ서초구	서오지여보ㅂ	02-2137-0411	(02512)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서울서부지사   서울특별시의	시출시작군구	서울특별시의 동대문구・성	l 동구・광진구・송파구・강동구・중랑구・강남구・서초구		
기록구도봉구   10		02-2024-1735	(03302) 서울 은평구 진관3로 36		
서울남부지사 성울특별시의 영등포구・관악구・구로구・금천구・동작구・강서구・양천구 333-248-8507 (24408) 강원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 강원도의 원주시・횡성군・춘천시・화천군・홍천군・양구군・인제군・영월군, 경기도의 가평군 033-650-5743 (25440) 강원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 강원도의 정선군・평창군・태백시・삼척시・강릉시・동해시・속초시・고성군・양양군 부산지역본부 (46519) 부산 북구 금곡대로441번길 26 부산광역시의 강서구・동구・부산진구・북구・사상구・사하구・서구・연제구・중구, 경상남도의 김해시・말양시・양산시 051-620-1975 (48518) 부산 남구 신선로 454-18 부산광역시의 금정구・기장군・남구・동래구・수영구・영도구・해운대구 055-212-7214 (51519)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경상남도의 창원시・통영시・함안군・거제시・고성군・의령군・창녕군 220-3240 (44538) 울산 중구 종가로 347 울산광역시 055-791-0712 (52733) 경남 진주시 남강로 1689 경상남도의 진주시・사천시・거창군・남해군・산청군・하동군・함앙군・합천군 대구자역본부 (42704)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의 고령군・경산시・영천시・청도군 (364616)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42 경상북도의 안동시・예천군・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주시・봉화군・문경시・상주시・군위군 054-713-3002 (39371)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253 경상북도의 구미시・김천시・철곡군・성주군	서울서부지사		구·종로구·서대문구·용산구·마포구·성북구·노원구· 		
지울특별시의 영등포구ㆍ관악구ㆍ구로구ㆍ금천구ㆍ등착구ㆍ강서구ㆍ양천구 033-248-8507 (24408) 강원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 강원도의 원주시ㆍ횡성군ㆍ춘천시ㆍ화천군ㆍ흥천군ㆍ양구군ㆍ인제군ㆍ영월군, 경기도의 가평군 033-650-5743 (25440) 강원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 강원도의 정선군ㆍ평창군ㆍ태백시ㆍ삼척시ㆍ강릉시ㆍ동해시ㆍ속초시ㆍ고성군ㆍ양안군  부산지역본부 (46519) 부산 북구 금곡대로441번길 26 부산광역시의 강서구ㆍ동구ㆍ부산진구ㆍ북구ㆍ사상구ㆍ사하구ㆍ서구ㆍ연제구ㆍ중구, 경상남도의 김해시ㆍ밀양시ㆍ양산시 051-620-1975 (48518) 부산 남구 신선로 454-18 부산광역시의 금정구ㆍ기장군ㆍ남구ㆍ동래구ㆍ수영구ㆍ영도구ㆍ해운대구 경남지사 (51519)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경상남도의 청원시ㆍ통영시ㆍ함안군ㆍ거제시ㆍ고성군ㆍ의령군ㆍ창녕군 원산자와 (36545의 장원시ㆍ함안군ㆍ거제시ㆍ고성군ㆍ의령군ㆍ창녕군 3산당역시 3산남도의 전주시ㆍ사천시ㆍ거창군ㆍ남래군ㆍ산청군ㆍ하동군ㆍ함양군ㆍ합천군 (42704)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의 고령군ㆍ경산시ㆍ영천시ㆍ청도군 경북지사 (36616)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42 경상북도의 안동시ㆍ에천군ㆍ의성군ㆍ청송군ㆍ영양군ㆍ영주시ㆍ봉화군ㆍ문경시ㆍ상주시ㆍ군위군 (37580)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 경남동부지사 (37580)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 경남부의 고형국가3002 (39371)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253 경상북도의 구미시ㆍ김천시ㆍ철곡군ㆍ성주군	서우나ㅂ지사	02-6907-7175	(07225)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		
강원도의 원주시・횡성군・순천시・화천군・홍천군・양구군・인제군・영월군, 경기도의 가평군  033-650-5743 (25440) 강원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 강원도의 정선군・평창군・태백시・삼척시・강릉시・동해시・속초시・고성군・양양군  051-330-1814 (46519) 부산 북구 금곡대로441번길 26 부산광역시의 강서구・동구・부산진구・북구・사상구・사하구・서구・연제구・중구, 경상남도의 김해시・밀양시・양산시  051-620-1975 (48518) 부산 남구 신선로 454-18 부산광역시의 금정구・기장군・남구・동래구・수영구・영도구・해운대구  3당시자 (51519)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경상남도의 창원시・통영시・함안군・거제시・고성군・의령군・창녕군 052-220-3240 (44538) 울산 중구 종가로 347 울산광역시  3당시부지사 (52733) 경남 진주시 남강로 1689 경상남도의 진주시・사천시・거창군・남해군・산청군・하동군・함양군・합천군 (42704)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의 고령군・경산시・영천시・청도군 (36414)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의 고령군・경산시・영천시・청도군 (36416)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42 경상북도의 안동시・예천군・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주시・봉화군・문경시・성주시・군위군 (37580)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 경상북도의 포항시・영덕군・울릉군・경주시․울진군 (36414) 연부 남동 구 남동서로 209	시킬리구시시	서울특별시의 영등포구・	관악구・구로구・금천구・동작구・강서구・양천구		
강원동부지사		033-248-8507	(24408) 강원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		
강원동부지사	강원지사		· 춘천시 · 화천군 · 홍천군 · 양구군 · 인제군 · 영월군,		
강원도의 정선군ㆍ평장군ㆍ태백시ㆍ삼척시ㆍ강릉시ㆍ동해시ㆍ속초시ㆍ고성군ㆍ양양군  051-330-1814 (46519) 부산 북구 금곡대로441번길 26  부산광역시의 강서구ㆍ동구ㆍ부산진구ㆍ북구ㆍ사상구ㆍ사하구ㆍ서구ㆍ연제구ㆍ중구, 경상남도의 김해시ㆍ밀양시ㆍ양산시  051-620-1975 (48518) 부산 남구 신선로 454-18  부산광역시의 금정구ㆍ기장군ㆍ남구ㆍ동래구ㆍ수영구ㆍ영도구ㆍ해운대구  경남지사 (51519)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경상남도의 창원시ㆍ통영사ㆍ합안군ㆍ거제시ㆍ고성군ㆍ의령군ㆍ창녕군  울산광역시  36남시부지사 (52733) 경남 진주시 남강로 1689  경상남도의 진주시ㆍ사천시ㆍ거창군ㆍ남해군ㆍ산청군ㆍ하동군ㆍ합양군ㆍ합천군  대구지역본부 (52733) 경남 진주시 남강로 1689  대구자역본부 (42704)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의 고령군ㆍ경산시ㆍ영천시ㆍ청도군  경북지사 (3646)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42  경상북도의 안동시ㆍ예천군ㆍ의성군ㆍ청송군ㆍ영양군ㆍ영주시ㆍ봉회군ㆍ문경시ㆍ상주시ㆍ군위군  3명북시부지사 (37580)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  경상북도의 포항시ㆍ영덕군ㆍ울릉군ㆍ경주시 울진군  경상북도의 구미시ㆍ김천시ㆍ칠곡군ㆍ성주군  (39371)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253  경상북도의 구미시ㆍ김천시ㆍ칠곡군ㆍ성주군	가의도브지사	033-650-5743	(25440) 강원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		
부산자역본부	) 전급하는 기계 	강원도의 정선군・평창군・1	태백시 • 삼척시 • 강릉시 • 동해시 • 속초시 • 고성군 • 양양군		
변산남부지자		051-330-1814	(46519) 부산 북구 금곡대로441번길 26		
부산담부시사	부산지역본부				
변산광역시의 금청구ㆍ기장군ㆍ남구ㆍ동래구ㆍ수영구ㆍ영도구ㆍ해운대구	ᆸᄉᆘᄔᆸᅱᄼᆘ	051-620-1975	(48518) 부산 남구 신선로 454-18		
경남지사 경상남도의 창원시・통영시・함안군・거제시・고성군・의령군・창녕군 052-220-3240 (44538) 울산 중구 종가로 347 울산광역시 3산남도의 진주시・사천시・거창군・남해군・산청군・하동군・함양군・합천군 경상남도의 진주시・사천시・거창군・남해군・산청군・하동군・함양군・합천군 053-580-2312 (42704)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의 고령군・경산시・영천시・청도군 3상북도의 안동시・예천군・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주시・봉화군・문경시・상주시・군위군 054-230-3227 (37580)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 경상북도의 포항시・영덕군・울릉군・경주시.울진군 3상북도의 모항시・영덕군・울릉군・경주시.울진군 3상북도의 구미시・김천시・칠곡군・성주군 이32-820-8607 (21634)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구한급구시시	부산광역시의 금정구・7	장군・남구・동래구・수영구・영도구・해운대구		
경상남도의 창원시ㆍ통영시ㆍ함안군ㆍ거제시ㆍ고성군ㆍ의령군ㆍ창녕군  8산지사    2산광역시     3산광역시     3산남도의 진주시ㆍ사천시ㆍ거창군ㆍ남해군ㆍ산청군ㆍ하동군ㆍ함양군ㆍ합천군     3산남도의 진주시ㆍ사천시ㆍ거창군ㆍ남해군ㆍ산청군ㆍ하동군ㆍ함양군ㆍ합천군     1053-580-2312   (42704)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11구자역본부   053-580-2312   (42704)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11구광역시, 경상북도의 고령군ㆍ경산시ㆍ영천시ㆍ청도군     3산북도의 안동시ㆍ예천군ㆍ의성군ㆍ청송군ㆍ영양군ㆍ영주시ㆍ봉화군ㆍ문경시ㆍ상주시ㆍ군위군     3산북도의 안동시ㆍ예천군ㆍ의성군ㆍ청송군ㆍ영양군ㆍ영주시ㆍ봉화군ㆍ문경시ㆍ상주시ㆍ군위군     3성북도의 포항시ㆍ영덕군ㆍ울릉군ㆍ경주시․울진군     3성북도의 포항시ㆍ영덕군ㆍ울릉군ㆍ경주시․울진군     3성북도의 구미시ㆍ김천시ㆍ칠곡군ㆍ성주군     10천지역본부   032-820-8607   (21634)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カトエロ	055-212-7214	(51519)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울산지사	6 급 시 시 	경상남도의 창원시·통영	g시·함안군·거제시·고성군·의령군·창녕군		
응산광역시  경남서부지사	으사지나	052-220-3240	(44538) 울산 중구 종가로 347		
경남서부지사 경상남도의 진주시・사천시・거창군・남해군・산청군・하동군・함양군・합천군  대구지역본부 053-580-2312 (42704)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의 고령군・경산시・영천시・청도군  정북지사 7상북도의 안동시・예천군・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주시・봉화군・문경시・상주시・군위군  전북동부지사 7성상북도의 포항시・영덕군・울릉군・경주시 울진군  경상북도의 포항시・영덕군・울릉군・경주시 울진군  3성북도의 구미시・김천시・칠곡군・성주군  032-820-8607 (21634)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골신시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의 진주시・사전시・거장군・남해군・산정군・하동군・함양군・합전군  대구지역본부	겨나서ㅂㄲㅆ	055-791-0712	(52733) 경남 진주시 남강로 1689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의 고령군・경산시・영천시・청도군 054-840-3012 (36616)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42 경상북도의 안동시・예천군・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주시・봉화군・문경시・상주시・군위군 054-230-3227 (37580)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 경상북도의 포항시・영덕군・울릉군・경주시.울진군 054-713-3002 (39371)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253 경상북도의 구미시・김천시・칠곡군・성주군 032-820-8607 (21634)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경급시구시시 	경상남도의 진주시·사천시·거창군·남해군·산청군·하동군·함양군·합천군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의 고령군・경산시・영천시・청도군  054-840-3012 (36616)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42 경상북도의 안동시・예천군・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주시・봉화군・문경시・ 상주시・군위군  054-230-3227 (37580)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 경상북도의 포항시・영덕군・울릉군・경주시.울진군  054-713-3002 (39371)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253 경상북도의 구미시・김천시・칠곡군・성주군  032-820-8607 (21634)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디그지어보다	053-580-2312	(42704)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경북지사 경상북도의 안동시・예천군・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주시・봉화군・문경시・ 상주시・군위군 054-230-3227 (37580)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 경상북도의 포항시・영덕군・울릉군・경주시.울진군 054-713-3002 (39371)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253 경상북도의 구미시・김천시・칠곡군・성주군 032-820-8607 (21634)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네구시익근구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의	고령군・경산시・영천시・청도군		
상주시・군위군		054-840-3012	(36616)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42		
경북동부지사 경상북도의 포항시・영덕군・울릉군・경주시.울진군  3숙서부지사 054-713-3002 (39371)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253 경상북도의 구미시・김천시・칠곡군・성주군  032-820-8607 (21634)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경북지사	—	군·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주시·봉화군·문경시·		
경상북도의 포항시·영덕군·울릉군·경주시.울진군  054-713-3002 (39371)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253 경상북도의 구미시·김천시·칠곡군·성주군  032-820-8607 (21634)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겨브도ㅂ되시	054-230-3227	(37580)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		
경북서부지사 경상북도의 구미시·김천시·칠곡군·성주군 032-820-8607 (21634)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경독증구시시 	경상북도의	포항시・영덕군・울릉군・경주시.울진군		
경상북도의 구미시·김천시·칠곡군·성주군 032-820-8607 (21634)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거ㅂ니ㅂ키니	054-713-3002	(39371)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253		
│ 인천지역본부 ├────────────────────────────────────	성국시구시사	경상북도의 구미시·김천	선시·칠곡군·성주군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032-820-8607	(21634)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인선시역본무 	인천광역시			

기교내	담당자 연락처	소재지		
기관명	관할 구역			
カカエル	031-249-1206	(16626)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경기지사	경기도의 수원시 • 안양시	·의왕시·군포시·화성시·과천시·안산시		
	031-850-9117	(11780) 경기 의정부시 추동로 140		
경기북부지사	경기도의 의정부시·파주시 구리시, 강원도의 철원군	• 동두천시 • 양주시 • 남양주시 • 포천시 • 연천군 • 고양시 •		
경기도ㅂ지시	031-750-6262	(13313)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		
경기동부지사	경기도의 성남시 이천시	• 여주시 • 광주시 • 하남시 • 양평군		
거기나ㅂ기시	031-615-9042	(17561) 경기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51-23		
경기남부지사	경기도의 안성시・용인시	· 오산시 · 평택시		
거기나ㅂ기니	032-719-0803	(14488)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463번길 69		
경기서부지사	경기도의 부천시・김포시	l·시흥시·광명시·시흥시		
과조되어비비	062-970-1742	(61008)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의 나주시·화순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장성군·영광군·함평군			
저ㅂㄲㄲ	063-210-9261	(54852)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전북지사	전라북도 전지역			
저나기내	061-720-8522	(57948) 전남 순천시 순광로 35-2		
전남지사	전라남도의 여수시・순천	· 사용 · 사용 · 보성군		
저나시ㅂ기시	061-288-3313	(58604) 전남 목포시 영산로 820		
전남서부지사	전라남도의 목포시・신안군・무안군・영암군・진도군・강진군・해남군・완도군・장흥군			
ᅰ쥐ᆡ	064-729-0735	(63220)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디저지어티티	042-580-9115	(35000)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충청남도의 금	산군 • 논산시 • 계룡시 • 부여군 • 보령시 • 서천군 • 청양군		
ᄎᆸᅱᆡ	043-279-9011	(28456)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번길 81		
충북지사	충청북도 전지역			
ᄎ나ᅱᆡ	041-620-7617	(31081)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1길 27		
충남지사	충청남도의 천안시・서신	· 사시·태안군·아산시·예산군·당진시·홍성군		
비조되다	044-410-8013	(3012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96		
세종지사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도의 공주시		

###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지원 사업 대상 제외 기관

- 1.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및 그 지방기관
  - ☞ [예]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및 이에 준하는 민간 단체
  - ☞ [예] 사단법인 ○○○협회. ○○○ 학회 등
- 3. 「보험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은행법」,「상호저축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
  - ☞ [예] ㅇㅇ은행, ㅇㅇ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 4.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부대 및 기관과 이와 관련된 민간 시설 관리 용역업체
  - ☞ [예] 병무청, ㅇㅇㅇ부대, ㅇㅇㅇ사령부 등
- 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중 **직업** 교육훈련기관으로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지 못한 기관
  - ☞ [예] ㅇㅇㅇ미용학원, ㅇㅇㅇ컴퓨터학원, ㅇㅇㅇ학원 등
-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
  - ☞ [예]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 7.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조례에 따른 소속 행정 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또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공공시설, 「지방 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등 이에 준하는 기관
  - ☞ [예] ㅇㅇ도청/시청, 동사무소, 구립/시립 ㅇㅇㅇ센터 등
- 8.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 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에 준하는 기관
  - ☞ [예]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ㅇㅇㅇ협동조합 등
- 9.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로 일반대학(4년제) 및 전문대학
  - ☞ [예]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충청대학교 등

#### <참고2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검색 방법>

- 1. 마이스터넷 홈페이지 하단의 「**숙련기술인 정보**」에서 <sup>11</sup> 버튼, 또는 이름 검색을 통해 「**숙련기술인 검색**」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2. 구분을 '산업현장교수'로 선택한 후 필요에 따라 지역, 분야, 직종 등을 지정합니다.
- 3. 이름/단체명을 쓰지 않은 채로 🖸 모양을 클릭하여 검색합니다.



#### <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지원사업 신청분야 참고자료 >

지이내어 보아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기수별 선정 분야			
지원사업 분야 	8기 – 13기(기존)	14기(신규)		
1. 기계	기계, 생산품질관리	기계		
2. 재료	재	료		
3. 화학	화	학		
4. 섬유의복	섬유	의복		
5. 전기전자	전기	전자		
6. 정보통신	정보	통신		
7. 식품가공	식품가공	식품가공		
8. 건설	건설	건설		
9. 디자인·문화콘텐츠	디자인, 문화콘텐츠	디자인·문화콘텐츠		
10. 이 미용	디자인	이.미용		
11. 음식서비스	식품가공	음식서비스		
12. 공예	건설, 디자인	공예		
13. 산업안전	HRD	산업안전		
14. 경영·회계·사무	HRD, 생산품질관리	경영·회계·사무		
15. HRD	HRD	HRD		

\* 분야 및 직종 관련 세부 정보는 국가직무능력표준(www.ncs.go.kr) - NCS 및 학습모듈 검색에서 확인

[별지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지원신청기관 담당자/대표자 용)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선정 및 활동을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가. 성명 나. 소속, 주소, 연락처(휴대전화) 다. 직위, 담당업무 라. 기타 기업정보 활용	사업과 관련한 정보 활용 나.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지원	가. 지원 신청인 등의 신청서 제출 시부터 3년 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종료 후 3년 경과 시까지 (위 기간이 지나면 수집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나, 해당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지원기관 선정 및 지원 활동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위의 보유기간동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항목 중 본인이 제출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지원신청기관명

담당자 성명 (기업의 경우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 [별지2]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지원신청서(기업지원)

#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지원 신청서(기업 지원)

신 청 인	①부 서				전화		
	 ②직 위			④연락처	휴대폰		
				4 274	FAX		
	③성 명				E-mail		
사	⑤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⑥사업자등록번호			
· 업	⑦사업체명			⑧대표자 성명			
장	9업 종			⑩상시근로자수		총	명
개 요	⑪연 매출액			⑫생신	··제품		
11	③소재지		1				
7	지원신청 분야	□ 기계 관련 □ 재료 관련 □ 화학 관련 □ 섬유·의복 전 □ 전기·전자 관련 □ 정보통신 관련 □ 식품가공 관련 □ 건설 전 □ 디자인·문화콘텐츠 관련 □이·미용 관련 □음식서비스 곤□공예 관련 □산업안전 관련 ⑤인적자원개발 분야 □ 경영·회계·사무 관련 □ HRD 관련					
			00,1	71 · 71 + E	IT LINE		
16	지원 희망 내용 						
⑰요청 산업현장교수				⑱지원희망 기간			
(1	9전수 대상자	- 00공장 00팩트 00명		⑩지원 장소			
	위와 같이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을 신청하며,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무효, 지원사업 취소·중단 등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 니다						
					년	월	일
	지원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녕 또는 인)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시	점부서류 1.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의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4]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8] 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전산시스템 직접 입력)						

[별지3]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지원 신청서(학교·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원)

#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지원 신청서(학교·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원)

신 청 인	①부 서				전화				
	 ②직 위			<ul><li>④연락처</li></ul>	휴대폰				
	Ø4 TI			[생원국사]	FAX				
_	③성 명				E-mail				
기	⑤기 관 명			⑥ 설립 (학교	·경영주체 에 한함)		□국립 □공립	│ □사립	
관 개	⑦기관구분	□ 마이스터고 □ 한국폴리틱	그 □ 특성화고 넥 □ 기타 (	□ 직업능	;력개발훈련	시설 )			
요	⑧ 소 재 지								
⑨지원신청 분야		기술분야	□ 기계 관련 □ 재료 관련 □ 화학 관련 □ 섬유·의복 관□ 전기·전자 관련 □ 정보통신 관련 □ 식품가공 관련 □ 건설 관련 □ 디자인·문화콘텐츠 관련 □이·미용 관련 □음식서비스 관련 □ 공예 관련 □ 산업안전 관련						
			※ 기능경기대회 참가 선수 지도 목적 (예 : □ 아니요 : □ ) 여부 체크						
① <b>八</b>	원 희망 내용								
⑪요청	산업현장교수			<sub>12</sub> 지원호	⑫지원희망 기간				
③전수	대상자	- 0학년 00	o과 OO명	<u> </u> (4) 지 원	면 장소				
① 수입	성행태	□ 정규교과(설	□ 정규교과(실습지도) □ 방과후 학습 □ 기타( )						
위와 같이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을 신청하며,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무효, 지원사업 취소·중단 등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 니다. 년 월 일									
지원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점부서류 1.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의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5] 수수료 2. 고용노동부 인가증(직업훈련시설 지정서) 1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 한함) 없음									

#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직무수행 계획서(기업지원)

전수분야 (직종)	(			)	산업현장교=	÷			(서명)	
지원신청기관					기 관 장				(직인)	
전수 지원 장소					담 당 자 이메일(E-ma	il)				
총 지원기	7.F	초	지원시간		1이다	1일당 지원시간				
년 월 일~ 월			)))이시간	주당 지원횟수(요일) 주○회(매주○일)			일당○시간(00:00~00:00) (식사시간: 00:00~00:00)			
※ 지원금액 산정 :	기초자료(	이므로	정확히 작성하	여 주시:	기 바랍니다.		, , , , , ,			
<u> </u>					전수 내용					
			항목별 구분				+1조 니 기 디 =	<del>-</del>	O.H	
	요구사	앙			용(수행내용) 진단내용 작성		최종성과목표	±	일정	
1			(기업진단	에 따른	전수내용 작성)					
2			<양식이 부=	족할 경원	<i>우 추가하여 작성.</i> 	>				
3										
4										
□ 지원일시별	l 전수	계획	(일자별로	정확히	작성)					
지원일시			세 부	내 용	2		방법		비고	
00월00일( 요일 00:00~00:00	일) 일	자별 전	선수 내용에 대접	하여 구치	체적으로 작성					
		< 8 <sup>‡</sup> Å	l이 부족할 경 <del>'</del>	우 추가히	하여 작성>					
□ 기대효과(예상) :										

위와 같이 직무수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장 귀하

[별지5] 직무수행계획서(학교·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직무수행 계획서(학교・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지원)

전수· (직·	분야 종)	(			)	산업현장교=	수		(서명)		
지원신	청기관					기 관 장			(직인)		
과	목					담당교사(교=	수)	<del>-</del> )			
전수 지	원 장소					이메일(E-ma	il)				
지원	유형	□ 정·	규교과	(실습지도)	□ 방고	바후 학습 □	기티	ł( )			
총	지원기간	<u>'</u>	총	지원시간	주당 지원횟수(요일)			1일당 지원시간			
	! 일~ #			○○시간 주○회(매주○일)				일당○시간(00:00~00:00) (식사시간: 00:00~00:00)			
※ 지원금	금액 산정 기	기초자료(	이므로	정확히 작성하							
	ו וו דו	다비요	ᄱ	<u> </u>		전수 내용					
L. <b>표 7</b>   연번		<b>고내</b> 등 요구사		항목별 구분)		요/스해내요\		최종성과목표	일정		
1	기근	프 기 시	<u>o</u>	기관 요청	기관 진단내용(수행내용) 기관 요청에 대한 진단내용 작성				20		
						<u>[수내용 작성)</u>					
2				<i>&lt;앙식이 부</i> :	이 부족할 경우 추가하여 작성>						
3											
4											
│ │	일시별	전수	계획	(일자별로 정	성확히	작성)					
	원일시			세 부	내 용	}		방법	비고		
	00월00일( 요일) 00:00~00:00 일자별 전수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양식이 부족할 경우 추가히					하여 작성>					
□ 기대효과(예상) :											
	□ 기네포팍(예정 <i>)</i> ·										

위와 같이 직무수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장 귀하

# 2022년도 산업현장교수 일자리 알선 확인서

산업현장 성명	_				기수		기	분야	명	
채용기약 (전화번		업 체 명 전화번호			(인)	기	업담당자*			(인)
	'21년도 산업현장교수의 취업알선 근로자 명단									
연번		성명	직위		나이(민	<u>†</u> )	채용시 (연월	I		출신학교
<i>O  )</i>	ماد	흥길동	<i>사원</i>		21세		′20.8	<i>일</i>		00고등학교

- \* 기업담당자 확인필요 : 기업 직인 또는 실인 및 인사담당자 날인 필수
- 위 양식 외 취업자 재직증명서 등의 양식으로도 제출 가능
- ※ 여러 기업에 취업 알선한 경우 1개 기업 당 한 장씩 별도 작성
- ※ '22년도 해당 산업현장교수가 소개(알선)하여 취업한 취업자명단 작성
- ※ 일자리 알선 확인서 제출 : '22년 하반기 제출 방법 및 제출 일정 안내 후 제출

# 지원 장소 확인서 [기업 지원]

				실제 지	원 장소 및 사유
사업체명	사업자등록 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주소)	실제 지원받는 장소의 주소	사업자등록지와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는 사유(간단하게)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와 실제 산업현장교수 지원을 받고자하는 장소가 다름을 확인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무효, 지원사업 취소·중단 등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2 년 월 일

대표자 : (직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장 귀하

[별지8]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기업지원)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모저

-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 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O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 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u>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u> 수집
  -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 본 동의 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 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 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인)

기업명

대표자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직업분야별 세부직종

구 분	분 야 (NCS 대분류 코드)	세부 직종 (NCS 중분류 코드)				
		기계가공[기계설계, 기계가공] (NCS 15_01, 02)				
		생산·공정관리[기계조립·관리, 기계품질관리] (NCS 15_03, 04)				
	   1.기계 (NCS 15)	냉동공조[기계장치설치] (NCS 15 _ 05)				
	1.7  71 (NCS 15)	차량 및 수송[자동차, 철도차량제작, 조선, 항공기제작] (NCS 15_06, 07, 08, 09)				
		금형 (NCS 15_10)				
		스마트공장 (NCS 15_11)				
	 2.재료 (NCS 16)	금속재료 (NCS 16_01)				
	2.州亚 (NCS 16)	요업재료 (NCS 16_02)				
		화학물질·화학공정관리[화학물질·화학공정관리, 석유기초화학물제조](NCS 17_01, 02)				
	3.화학 (NCS 17)	정밀화학제품제조 (NCS 17_03)				
		플라스틱·고무제품제조 (NCS 17_04)				
	4.섬유·의복 (NCS 18)	섬유제조 (NCS 18_01)				
	4.音π·当寺 (NCS 18)	패션 (NCS 18_02)				
	5.전기·전자 (NCS 19)	전기 (NCS 19_01)				
	5.전기·전자 (NCS 19)	전자[전자기기일반, 전자기기개발] (NCS 19_02, 03)				
기술·기능	6.정보통신 (NCS 20)	정보기술 (NCS 20_01)				
분야		통신기술 (NCS 20_02)				
		방송기술 (NCS 20_03)				
	 7.식품가공 (NCS 21)	식품가공 (NCS 21_01)				
	7.当古40 (NCS 21)	제과·제빵·떡제조 (NCS 21_02)				
		토목[건설공사·관리, 토목] (NCS 14_01, 02)				
	8.건설 (NCS 14)	건축[건축, 조경, 도시·교통] (NCS 14_03, 05, 06)				
		건설기계운전·정비 (NCS 14_07)				
		플랜트[플랜트, 해양자원] (NCS 14_04, 08)				
	9.디자인・문화콘텐츠	디자인 (NCS 8_02)				
	(NCS 8)	문화콘텐츠 (NCS 8_03)				
	10.이·미용(NCS 12)	이·미용 (NCS 12_01)				
	11.음식서비스 (NCS 13)	음식조리[식음료조리·서비스 중 <b>음식조리</b> 에 한함] (중분류 NCS 13_01 중 소분류 01 음식조리만 해당)				
	12.공예 (NCS 22)	공예 (NCS 22_02, NCS 1_04) ('중분류 NCS 24_01 중 소분류 04 화훼장식 포함)				
	13.산업안전 (NCS 23)	산업안전 (NCS 23_06)				
기업	14.경영·회계·사무	경영·회계·사무[기획사무, 총무인사, 재무·회계] (NCS 2_01, 02, 03)				
인적자원	(NCS 2)	생산·품질관리 (NCS 2_04)				
개발 분야	15.HRD(NCS 4의 일부)	HRD[평생교육, 직업교육] (NCS 4_02, 03)				

<sup>※</sup> NCS 분류코드는 2022년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에 따름